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1차 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외국대학 교원 국내대학 전임교원 겸직허용 근거 마련〉
■ 서지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442호)

2024. 11.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서지영 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30.
3. 회부연월일 : 2024. 10.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AI 등 신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역량 증대를 위해 우수한 외국대학 교원을 국내로 초빙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고 있음.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학의 교원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고 있어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교원 겸직을 좀 더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국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국내대학에 임용된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국내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외국대학의 우수인재를 통해 국내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증대시키고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 19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외국대학 교원이 겸직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국내대학의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정하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19조의3(외국대학 겸직에 관한 특례) ① 외국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국내대학에 임용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국내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의 교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는 외국대학 교원의 채용분야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공무원법」은 대학이 교육이나 연구를 위하여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¹⁾을 규정하고 있음.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국·공립대학의 교원은 교육공무원의 신분이 되고 「국가공무원법」 제64조²⁾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대상이 되며, 사립대학 교원도 「사

1)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2(외국인 교원) 대학은 교육이나 연구를 위하여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2)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립학교법」 3)에 따라 겸직이 금지됨.

또한, 공무원이 아니었던 자가 공무를 겸하게 되는 경우 인사혁신처 예규인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함⁴⁾.

따라서, 법 개정으로 기존의 규제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는 경우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대학 교원을 겸직하는 것이 용이해짐에 따라 외국대학의 우수인재를 초빙하여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교원으로 초빙하고자 하는 외국대학 교원이 속한 국가가 겸직을 금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겸직을 가능하게 하는 특례는 아니고, 해당 국가가 겸직을 허가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교원 겸직허용에 관한 국가나 대학 간의 갈등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교육부는 겸직 근거 조항 신설을 통해 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하면

3)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①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168쪽, (신청) 해당 공무원은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직위) 관련 상세 자료(수익발생 내역, 겸직 내용, 겸직기간 등 포함)를 <붙임 1> 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겸직허가 신청

-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이 이후 담당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직무가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재심사를 신청하여야 함

서 해당분야의 교육·연구 역량을 축적한 자를 국내대학 전임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여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88

※ 참고자료 : 겸직에 대한 유사입법사례

- 「교육공무원법」의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겸직 조항

제19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①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겸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그 해에 「상법」 제388조에 따라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전부를 소속학교의 장에게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재부품장비산업법」의 특화선도기업의 대표자, 임직원 겸직 조항

제58조(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① 교육공무원등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원은 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특화선도기업등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에 대한 허가는 직무상의 능력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 제1항 및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및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산학협력법」의 기술지주회사의 대표자, 임직원 겸직 조항

제36조의7(교직원, 연구원의 겸직 및 휴직) ① 대학의 교직원 및 연구기관의 직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직 하거나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겸직 또는 휴직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로 인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중소기업인력법」의 중소기업 대표자, 임직원 겸직 조항

제15조(겸임 또는 겸직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겸임 또는 겸직은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대학의 교원(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2.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 및 「울산과학기술원법」 제8조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이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또는 「협동연구개발 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또는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벤처기업법」의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 대표자, 임직원 겸직 조항

제16조의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① 교육공무원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국방분야의 연구기관은 제외한다)의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1. 전공, 보유기술 및 직무경험 등과 무관한 분야에 겸임·겸직하고자 하는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과 「협동연구개발 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및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